



## 대 법 원

### 제 1 부

### 판 결

사 건 2013도6326 사자명예훼손  
피 고 인 A  
상 고 인 피고인  
변 호 인 B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C  
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5. 9. 선고 2013노619 판결  
판 결 선 고 2013. 11. 14.

### 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### 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(제1심 및 원심이 각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)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증이 가고,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

